

대외협력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대외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서 대외협력에 관한 모든 운영상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대외협력발전에 기여할 대외협력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입학교류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기획혁신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교류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입학홍보과장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, 심의·건의한다.

1. 입학홍보과 홍보에 관한 기본정책의 설정
2. 입학홍보과 홍보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의 지원
3. 국내 대학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의 지원
4. 국내 대학 및 관련기관과의 각종 교류에 관한 협의 활동
5. 발전기금 모금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)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대외협력운영위원회 규정(8-2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)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